

#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2009. 2. 23 제정

2012. 12. 31 개정

## 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법률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교수·연구하고, 법률 실무분야에서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법률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 (과정) 본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.

1.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
2.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
3. 연구과정

## 제 2 장 조직

제 4 조 (교원) ①본 대학원의 수업과 학생지도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과 석좌교수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가 담당한다.

②본 대학원의 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학기당 6학점에 해당하는 매주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(법학전문대학원 전체교수회의) 본 대학원 전체교수회의는 본 대학원의 수업과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본 대학원의 학사운영, 학생지도 및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제 6 조 (행정조직) ①본 대학원에 법학전문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을 대표하며, 총장의 명을 받아 본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본 대학원에 교무부원장, 학생부원장 및 기획평가부장을 둔다.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며, 대학원장 유고시 교무부원장, 학생부원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(개정 2011.2.11)

③교무부원장은 교무, 학적, 입학, 교수지원, 시설, 재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(개정 2011.2.11)

##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- ④학생부원장은 학생의 학습지원, 복지증진,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, 자치활동, 생활 및 진로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1.2.11)
- ⑤기획평가부장은 기획, 평가, 홍보, 국제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1.2.11)
- ⑥본 대학원에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센터를 두며, 행정관리센터에는 사무직원 및 유급조교를 둘 수 있다. (본항신설 2011.2.11)
- ⑦2008학년도까지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·편입학·전과하여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복수전공·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원에 인적·물적 시설을 둔다. 본교 법과대학은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.
- ⑧본 대학원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행정업무와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임교수 또는 전담교수와 사무직원, 유급조교 등을 둘 수 있다.  
(개정 2011.2.11)

제 7 조 (위원회) ①본 대학원에 발전위원회, 학사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, 교육과정심의위원회, 입학전형위원회,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장학위원회, 특성화추진위원회,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11.2.11)

②전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8 조 (연구소) ①본 대학원에 법학연구소, 생명의료법연구소, 젠더법학연구소를 둔다.

②각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연구소장을 둔다.

③연구소장은 연구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원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④각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제 9 조 (법학도서관) ①국내외 법률서적 및 정보매체 등을 수집·정리·보존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과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학도서관을 둔다.

②법학도서관에는 1급 사서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10 조 (법학전문대학원 기숙사) ①본 대학원 학생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효과적인 학업 수행을 위하여 본 대학원 전용 기숙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0.6.7)

②본 대학원 전용 기숙사에 사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입학·편입학·재입학·복학 및 제적

### 제 1 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

제 11 조 (입학시기)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편입학, 재입학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입학전형의 구분) 본 대학원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제 13 조 (입학자격)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일반전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. (개정 2010.6.7)

1. 국내외 4년제 이상의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하거나 고등교육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입학년도 전년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(LEET)에 응시하여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

3. 입학전형일 이전 2년 이내에 공인 영어능력시험(TOEFL, TOEIC, TEPS에 한함)을 치르고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

②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전항의 자격 외에, 본 대학원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제 14 조 (입학전형) ①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입학지원서류 심사와 논술 또는 심층 면접 시험으로 시행한다.

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5 조 (휴학)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 첫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다.

②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.

③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한다.

제 16 조 (제적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학생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(이하에서는 “학사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특별한 사정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

2.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
3.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(개정 2011.2.24)

4. 재학년한 내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(개정 2011.2.24)

5.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
제 17 조 (편입학) ①본 대학원은 입학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 중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본 대학원의 2학년 과정에 편입시킬 수 있다.

1.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자

2. 편입학전형일 이전 2년 이내에 공인 영어능력시험(TOEFL, TOEIC, TEPS에 한함)을 치르고 일정 성적을 취득한 자

②편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기타 편입학 전형절차는 신입학 전형절차를 준용한다.

④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 또는 전공선택

##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,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 또는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본항신설 2010.6.7)

제 18 조 (재입학)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6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11.2.24)

②총장은 퇴학·제적사유 및 재입학 사유 등을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재입학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0.6.7)

## 제 2 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

제 19 조 (입학자격)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. (개정 2012.2.29)

1. 법학석사학위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

2. 기타 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석·박사과정 또는 학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

3.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

②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구 및 실무경력을 가진 자

제 20 조 (휴학)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를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
②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.

③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휴학기간은 재학년한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(이하 “논문제출년한”이라 한다)에 산입한다.

제 21 조 (준용) ①이 시행세칙 제14조, 제16조, 제18조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준용한다.

②이 시행세칙 제14조, 제16조는 연구과정에 준용한다.

## 제 4 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, 학점, 성적 및 수료

### 제 1 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

제 22 조 (수업년한, 재학년한, 학기)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고, 재학년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산입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0.6.7)

②매 수업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고 이를 1학기와 2학기로 나룬다. (본항신설 2010.6.7)

③제2항의 일반학기 외에 하기방학과 동기방학 중에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. (본항신설 2010.6.7)

제 23 조 (교과과정) ①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.

②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은 별표 1과 같이 법률기본필수 4과목(12학점), 실무필수 5과목(8학점), 전공기초필수 4과목(12학점) 등 총 13과목(총 32학점)으로 한다.

③각 전공별 전공기초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한다.

제 24 조 (교과목 개설) ①본 대학원 소속 교수와 본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(이하에서는 “교육과정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교과목의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교과목 개설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가 수요적합성을 심의하고, 학사운영위원회가 교수의 강의적합성을 심의한다.

③본 대학원 전체교수회의는 전항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교과목 개설 여부를 의결한다.

④개설교과목의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.

제 25 조 (전공) ①학생은 2학년 1학기 개강 이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본 대학원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전공 중에서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기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강 이전에 자기설계전공제안서를 제출한 후, 한 학기 동안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2학년 1학기 말까지 자기설계전공을 정하여야 한다.

### 1. 수요영역별 전공

- 가. 기업법무전공
- 나. 공공정책법무전공
- 다. 국제법무전공
- 라. 공익법무전공
- 마. 시민생활법무전공

### 2. 특성화 전공

- 가. Gender법전공
- 나. 생명의료법전공

### 3. 자기설계전공

- ②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2개 이상의 전공을 정할 수 있다.
- ③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- ④각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기초필수과목(4과목, 12학점)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⑤자기설계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전공기초

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필수과목(12학점 이상)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6.7)

제 26 조 (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)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 
②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 27 조 (학기당 신청학점) ①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최소 6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2.24)

②대학원장은 학기말의 평균성적이 2.5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③계절학기에는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휴학 중인 학생은 계절학기에 등록하여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(본항신설 2010.6.7)

제 28 조 (삭제 2012.12.31)

제 29 조 (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과 공동학위과정) ①학생이 국내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관하여 이수인정신청을 하는 경우, 15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0.6.7)

②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0 조 (학업성적) ①교수는 담당 교과목에 관하여 시험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뒤,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②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, D-이상은 급제, F는 낙제로 한다.

등급	평점
A+	4.3
A0	4.0
A-	3.7
B+	3.3
B0	3.0
B-	2.7
C+	2.3
C0	2.0
C-	1.7
D+	1.3
D0	1.0
D-	0.7
F	0

③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(미완)의 성적을 부여

하며, 이 경우 성적사정이 끝난 후에 사정한 성적으로 이를 대체한다.

④ 학업성적은 강의시간의 6분의 5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D-이상 또는 S(합격)인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한 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.

⑤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S(합격) 또는 U(불합격)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S는 평균성적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되, 졸업학점에는 산입할 수 있다.

⑥ 낙제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.

⑦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, 기존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새로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취득성적으로 인정한다.

⑧ 성적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1 조 (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) ① 학기의 평균성적이 2.50 미만인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생부원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1.2.24)

② 학기의 평균성적이 2.00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, 학년의 평균성적이 2.00 이하인 학생은 유급된다. 이 경우 제29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된 학점과 외국어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에서 부여된 평점은 제외하며,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. (개정 2011.2.24)

③ 학년의 계산은 휴학이나 재입학을 불문하고 학생별로 본 대학원에 등록한 연속된 2개 학기를 단위로 한다. (본항신설 2011.2.24)

④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(2개 학기)에 취득한 성적의 등급이 B0 이하인 교과목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. (개정 2011.2.24)

⑤ 재학년한의 만료 시까지 전체 평균성적이 2.00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12.12.31.)

⑥ 학사경고 및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본항신설 2011.2.24)

제 32 조 (수업일수) ① 본 대학원의 1학기 수업일수는 15주로 하며, 담당교수는 총 수업일수를 염수하여야 한다.

②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시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행평가 등 수업과 관련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법정공휴일 및 수업과 무관한 행사휴무일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않고, 결강된 경우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3 조 (수강신청, 재수강,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철회) ① 학생은 수강신청, 재수강, 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, 교과목 담당교수, 학생부원장 등과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다. (개정 2011.2.24)

② 성적등급이 C+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. 재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졸업 전에 재수강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경우,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대체수강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- ③수강신청의 변경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.  
④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에 수강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 철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“W”로 표시한다.

제 34 조 (법학사 취득자에 대한 특례) ①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기본필수 4과목(12학점)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0.6.7)

1. 학부과정에서 본 대학원 법률기본필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수강 하여 해당과목의 성적이 A-이상인 경우
2. (삭제 2010.6.7)

②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산입한다.

제 35 조 (법학 복수전공자에 대한 특례) ①학부에서 법학을 복수전공한 학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기본필수과목 중에서 최대 4과목(12학점)까지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수강이 면제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산입한다.

제 36 조 (국내외 연수) ①본 대학원 학생은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.

②국내외 연수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연수기간 및 연수내용을 고려하여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.

## 제 2 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

제 37 조 (수업년한, 재학년한)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3학기로 하며, 재학년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38 조 (교과과정)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법학전문석사과정의 교과과정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·박사과정의 교과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되, 필요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개설할 수 있다. (개정 2012.2.29)

②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한 법률기본 필수과목과 실무필수과목, 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개정 2012.2.29)

③대학원장은 제1항의 교과목 이외에 본 대학교 다른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에 대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2.29)

제 39 조 (전공)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전공

을 정하여야 한다.

- 제 40 조 (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) ①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 (개정 2012.2.29)  
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4학점(논문세미나 6학점 제외)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12.2.29)  
③학생은 한 학기에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에는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2.2.29)  
④학생은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개별과제연구를 최소 1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, 논문세미나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2.29)
- 제 41 조 (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) ①학생이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입학 전후에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.  
②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 
③제2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 42 조 (준용) 이 시행세칙 제24조, 제28조, 제30조, 제32조 제1항, 제33조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준용한다.

### 제 3 절 연구과정

- 제 43 조 (연구과정) ①연구과정에는 생명의료법 전문가과정, 젠더법 전문가과정, 기획주제 전문가과정을 둔다.  
②연구과정의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  
③연구과정의 관리는 각 연구소가 담당한다.  
④이 시행세칙 제24조, 제30조는 연구과정에 준용한다.

### 제 4 절 학술법학학위과정

- 제 44 조 (학술법학학위과정의 위탁운영) 본 대학원은 본교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학술법학 석·박사학위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한다.

### 제 5 장 학위수여

- 제 45 조 (학위수여) ①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26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, 본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(종합시험)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 
②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서 제40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,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##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제 46 조 (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법학전문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
2.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3.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

제 46 조의 2 (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) ①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

②논문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.

(본조신설 2012.2.29)

제 47 조 (논문제출년한)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2.29)

제 48 조 (졸업) ①이 시행세칙이 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중서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한다.

②학위증서에는 전공을 표시한다.

③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.

④학위청구논문, 논문제출자격시험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 6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

제 49 조 (학생지도) 학생은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, 학생부원장,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1.2.24)

제 50 조 (교수의 학생지도) ①전임교수의 학생지도프로그램으로 개별면담지도, 전공별 개인지도, 주제별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둔다.

②전임교수는 매학기 일정 시간 이상 위 학생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.

③전임교수의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51 조 (장학금) ①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별하며, 기탁기금장학금은 대학원장학금으로 본다.

②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로 이화사랑장학금, 이화민음장학금, 이화소망장학금 제도를 둔다.

③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제도로 이화최우수장학금, 이화차우수장학금, 이화우수장학금 제도를 둔다.

④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등록 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(본항신설 2010.6.7)

## 제 7 장 보칙

제 52 조 (학사운영규정 등 제정) 대학원장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시행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사운영내규 및 기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53 조 (법과대학에 관한 경과규정) 2008학년도까지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·편입학·전과하여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학을 복수전공·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관리를 위하여 법과대학을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킨다. (개정 2012.12.31.)

부 칙(2009. 2. 23 제정)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6. 7 개정)

이 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 제3항, 제27조 제3항 및 제40조 제3항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2. 11 개정)

이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2. 24 개정)

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 제1항, 제33조 제1항 및 제49조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2. 29 개정)

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31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필수 과목		
과 목 구 분	과목 및 학점	필 수 교 과 목
법률기본 필수	4과목/12학점	공법의 기본원리, 민·상법의 기초, 형법의 기본원리, 민·형사절차법 개관 (이상 각 3학점)
실무 필수	5과목 / 8학점	법률정보의 조사(1학점), 법문서의 작성(2학점), 현장실습(2학점), 모의재판(1학점), 법조윤리(2학점)
전공기초 필수	4과목/12학점	각 전공별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정함.